

(앞쪽)

과세연도	~	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(갑)		법인명 (성명)		
특정외국법인명				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		
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	① 자본금		② 발행주식 수			
	자기자본	납입자본				
각 내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	구분	직접	간접	합계		
	③ 보유주식의 수					
	④ 보유비율(③/②)	%	%	%		
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	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		[] 우리나라 회계기준 [] 외국(거주지국) 회계기준			
	구분		외국 통화 (통화 종류:)	환율	환산 후 금액(원)	
	소득 금액	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				
		⑦ 당기순이익				
		⑧ 합계(⑥ + ⑦)				
	차감 금액	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				
		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, 퇴직 급여, 그 밖의 사외유출				
		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				
		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	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			
			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(분배금)			
			⑭ 소계[(⑫ - ⑬) ≥ 0]			
		평가이익	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			
			⑯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			
			⑰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			
			⑱ 소계[(⑮ - ⑯)+⑰]			
	⑲ 합계(⑨ + ⑩ + ⑪ + ⑭ + ⑱)					
	⑳ 차감 유보소득(⑧ - ⑲)					
	㉑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					
	㉒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(㉑ - ㉒)					
	㉓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(㉒ × ④의 합계율)					
	수동 소득 계산 특례	㉔ 총수입금액에서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		%		
		㉕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(㉒ × ㉔ × ④의 합계율)				

작성방법

- ※ 이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.
- ※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,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 중개주식회사(www.smb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(예시: 미국 USD)로 작성합니다.

- ①・②: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.
- ③・④: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7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. 이 경우 ③란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(출자지분)은 제외합니다.
- ⑤: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- ⑥ ~ ㉑: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 다만,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.
- ⑥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[별지 제30호서식(을)]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⑦: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.
- ⑨: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(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)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. 다만,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(분배)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.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.

구분	작성서식
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	별지 제30호서식(을) ⑭ 또는 ㉐
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(배당 및 분배금에 한함)	이 서식 ⑨ 및 ⑬
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	별지 제30호서식(을) ㉑ 또는 ㉒

- ⑩: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, 퇴직급여,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⑫: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.
- ⑬: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(⑨)을 적습니다.
- ⑮ ~ ⑰: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(미실현 이익)을 산출합니다.
- ㉑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.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- ㉔・㉕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, ㉔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[별지 제32호서식(을)]의 ㉑ "비율"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.

(앞쪽)

과세연도	. . . ~ . . .		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(을)			법인명 (성명)		
[단위: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(거주지국) 통화], 통화 종류: ()								
특정 외국법인	① 법인명			② 업종				
	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			④ 사업연도				
	⑤ 소재지							
특정 외국법인 조정 이월 이익 잉여금 계산명세	⑥ 사업연도	⑦ 전기 이월이익잉여금		⑧ 전기 임의 적립금 누계액	⑨ 전기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		⑩ 소계 (⑦ + ⑧ - ⑨)	
	⑪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 보소득	배당(분배) 처분액			상여금 등 처분액			⑬ 적용 제외 유보소득 (⑪ - ⑭ - ⑰)
		⑫ 직전 연도 누계액	⑬ 해당 사업연도	⑭ 처분 누계액 (⑫ + ⑬)	⑮ 직전 연도 누계액	⑯ 해당 사업연도	⑰ 처분 누계액 (⑮ + ⑯)	
	⑱ 「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적용 제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	배당(분배) 처분액			상여금 등 처분액			⑲ 적용 제외 유보소득 (⑱ - ⑳ - ㉔)
	⑳ 직전 연도 누계액	㉑ 해당 사업연도	㉒ 처분 누계액 (㉑ + ㉒)	㉓ 직전 연도 누계액	㉔ 해당 사업연도	㉕ 처분 누계액 (㉓ + ㉔)		
㉗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(⑩ - ⑬ - ㉔)								
이월 결손금 명세	㉘ 사업연도	㉙ 전기 이월액		㉚ 당기 발생액	㉛ 결손금 처리액		㉜ 차기 이월액	
특정외국 법인의 중간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 처분 명세	㉝ 사업연도		㉞ 처분 전 이익잉여금		㉟ 당기 배당액		㊱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	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6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절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.

※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(거주지국)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, 통화 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(www.smb.s.biz)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(예시: 미국 USD)로 작성합니다.

1. ① ~ ⑤: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,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.
2. ⑦: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"전기 이월이익잉여금"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3. ⑧: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.
4. ⑨: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.
5. ⑪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,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⑫ ~ ⑰: ⑭란과 ⑰란의 합계가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⑫, ⑬, ⑮, ⑯란을 적습니다.
7. ⑫・⑮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・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.
8. ⑬・⑯: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(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. 이하 "배당금"이라 합니다)・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. 다만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(⑪ - ⑫ - ⑮)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・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[별지 제30호서식(갑)]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.
9. ⑰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.
10. ⑳ ~ ㉔: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.
11. ㉕: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[별지 제30호서식(갑)]의 ⑥"조정 이월이익잉여금"란으로 옮겨 적습니다.
12. ㉖ ~ ㉙: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(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+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)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.
13. ㉚ ~ ㉞: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(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. 다만,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.
14. ㉟: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(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다)을 적습니다.
15. ㊱: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(분배금) 총액을 적습니다.
16. ㊲: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(분배금) 총액 중 중간외국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.